##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31

발의연월일: 2020. 11. 10.

발 의 자:신정훈·김영호·이원택

송기헌 · 이광재 · 김경만

위성곤 · 소병훈 · 안호영

송언석 · 임호선 · 문진석

박완주 · 황운하 · 김회재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어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소 비 진작 등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이전공공기관은 현행법에 따라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국가균형발전 및 이전지역의 발전을 위한 여 러 기여를 해야 하는 만큼, 지역 내 소비 진작 등의 대책에 동참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자체가 발행하여 해당 지자체 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별 상권 활성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에 지역사랑 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 권의 구매 및 사용실적을 포함한 해당 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공공기관 이전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29조의3제2항 및 제3항).

#### 법률 제 호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5. 혁신도시 내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전공공기관이 제29조의3제
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 ① (생 략)	발전에 대한 기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	②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5. 혁신도시 내 소비 진작을 위
	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
	권의 구매 및 사용에 관한
	<u>사항</u>
<u>5.</u> (생 략)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	3
른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야 <u>한다</u> .	<u>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u>
	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공개하여
	<u>야 한다</u>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